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851

발의연월일: 2022. 8. 12.

발 의 자:이철규·정운천·구자근

이인선 · 김성원 · 양금희

노용호 • 박덕흠 • 서일준

한무경 • 박정하 • 김학용

윤주경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중앙회로 하여금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 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을 관리·운 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앙회는 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공제금을 지급해야 함.

그러나 중앙회가 공제금 수급사유가 발생한 미수령자 중 연락불가자 등에 대한 추가적 관리방안이 없어, 올해 6월말 기준 미신청인원 16,932명 중 연락불가자가 9,060명에 달하고 있고 미수령금액은 약 3 91억원에 이르는 실정임.

이에 공제가입자 관련 과세정보,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등을 관계기관에 정보제공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 폐업공제금 미수령자에 대한 공제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4제1항 등).

법률 제 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의4의 제목 중 "과세정보"를 "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국세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 제공을"을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으로 하며, 같은항 후단 중 "과세정보"를 "자료"로, "하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세정보"를 "자료"로 하고, 같은 조에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국세청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
- 2.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에 따른 가입자(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을 포함한다)의 주민등록자료
- 3. 법원행정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입자(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을 포함한다)의 가족관계등록자료
- ③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

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8장에 제1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6조의3(벌칙) 제11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 제공에 따른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했 개 아 제118조의4(과세정보 제공의 요 제118조의4(자료 제공의 요청) ① 청) ① 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 인공제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자격 확인, 공제금의 지급과 정 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 원 대상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국세청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하는 자료를 해당 각 호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 자에게 각각----. -다. 이 경우 <u>과세정보</u> 제공 요 ----자료-----청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 -----한다. 야 하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1. 국세청장: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과세정보 2.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 <신 설> 법」에 따른 가입자(가입자 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을 포함한다)의 주민등록자료 3. 법원행정처장 및 지방자치단 <신 설> 체의 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 입자(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② -----자료----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신 설>

<신 설>

<신 설>

ユ	유족을	포함한다)의	가족
관계등록자료			

- ③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활용 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 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 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 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 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 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 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 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 료 등을 면제한다.
- 제136조의3(벌칙) 제118조의4제3 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 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 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